

의안번호	2200352
의 퇴 인	김장겸 의원
회 답 일	2024. 6. 14.
추 계 번호	24B072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4 제2항제3호 (자율규제) 신설	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<u>3. 허위조작정보</u> ※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44조의12 (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) 신설	안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¹⁾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(이하 “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의4 제2항제3호 (자율규제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4조의12 (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) 신설	

1) 안 제44조의11(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)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사항에 허위조작정보 추가(안 제44조의4제2항제3호 신설)

-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²⁾단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항목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하고 있음(현행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대상)
- 현행 법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³⁾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항목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할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에 대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, 향후 정부의 지원 개시 계획을 알 수 없어 향후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
 -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 규제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사업은 없음

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(안 제44조의12 신설)

-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와 이를 위한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

2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.

3) 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청소년유해정보

2.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

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책임자 지정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,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행 점검 대상 업체 및 이행 점검 방식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방송사업자의 의무 이행 점검 등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음

[표 1] 2024년 방송사업자 등의 의무 이행 점검 등 관련 주요 사업 현황 (방송통신위원회)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사업내용	계획액
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(3132-313)	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	방송사-외주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준수를 위한 외주제작가이드라인 이행점검(상·하반기 2회)	100
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(3251-306)	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	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⁴⁾ 및 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‘정보통신망법’상 청소년보호 의무,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 관련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	236
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(3251-314)	부가통신사업자 불법 유해정보 차단기반마 련	- 전기통신사업법(제22조의3, 제22조의5 등)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‘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(웹하드, P2P)’ 불법유통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⁵⁾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에 대해 상시점검(모니터링)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,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- 정보통신망법(제44조의9, 제64조의8 등)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에 대해 책임자 지정, 투명성 보고서 작성지원·검수 및 의무교육 실시 - 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메타버스, 인터넷 1인 방송 등 정보통신망	3,297

세부사업	내역사업	사업내용	계획액
		을 통해 유통되는 휘발성 불법·음란 정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,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유통 플랫폼에 대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자율규제 적극 유도	
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(3251-318)	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	다양한 신유형 앱서비스 등장, 위치정보 융복합 서비스 증대에 따른 사업자 법규준수 실태점검 수행	1,000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-
- 4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
5) 전기통신역무의 종류,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(웹하드 사업자 및 일부 부가통신사업자)